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 2. 24 선고 2022가단14614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생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1. 13.

판 결 선 고 2023. 2. 2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0분의 90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. 12. 14. 접수 제1986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1/3은 원고가 부담하고,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-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0분의 90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. 12. 14. 접수 제1986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21. 12. 1.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0분의 90 지분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매매대금 10억 8,000만 원에 매도(이하 ‘이 사건 매매’라 한다)하였다.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은 2021. 12. 1. 1억 원(계약금), 2021. 12. 14. 5억 원을 각 지급하고, 나머지 4억 8,000만 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담보대출금 내지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고, 채무불이행의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삼기로 정하였다.

나.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6억 원을 지급하였고,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. 12. 14. 접수 제198628호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이전등기’라 한다)를 마쳐 주었다.

다.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나머지 4억 8,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수차례 독촉하였으나,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고, 원고는 위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~3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,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,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, 위 의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5억 원(6억 원 중 계약금 1억 원을 제외한 금액)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

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공우진

별 지 목 록

1동의 건물의 표시

서울특별시 성동구 동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성동구
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19층 아파트

1층 669.69㎡

2층 640.98㎡

3층 640.98㎡

4층 705.61㎡

5층 705.61㎡

6층 705.61㎡

7층 705.61㎡

8층 705.61㎡

9층 705.61㎡

10층 705.61㎡

11층 705.61㎡

12층 705.61㎡

13층 705.61㎡

14층 705.61㎡

15층 705.61㎡

16층 705.61㎡

17층 548.65㎡

18층 548.65㎡

19층 249.07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제1층 호

철근콘크리트구조 59.98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서울특별시 성동구 대 45156.3㎡

대지권의 표시

대지권의 종류 : 1.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의 비율 : 1. 45156.3분의 36.72

